

[별지 제3호서식]

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(제496조 관련)

1. 양 식

<h2>석 면 함 유</h2>	
	
<p>신 호 어: 발암성물질</p> <p>유해 · 위험성: 폐암, 악성중피종, 석면폐 등</p>	
<p>예방조치 문구: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.</p>	
<p>공급자 정보:</p>	

※ "공급자 정보"에는 석면해체·제거 사업주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
2. 규 격

<h3>규 격</h3>
<p>300cm²(가로×세로) 이상 (0.25×세로)≤가로≤(4×세로)</p>